

|      |  |
|------|--|
| 일련번호 |  |
|------|--|

## 기부금영수증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### ① 기부자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(법인명) |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
| 주소(소재지) |                     |

### ② 기부금 단체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단체명      |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     |
| (지점명*)   | (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)     |
| 소재지      |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|
| (지점 소재지) |                    |

\* 기부금 단체의 지점(분사무소)이 기부받은 경우,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### ③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

|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|
| 단체명 | 사업자등록번호 |
| 소재지 |         |

### ④ 기부내용

| 코 드 | 구 분<br>(금전 또는 현물) | 연월일 | 내 용 |    |    | 금 액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품명  | 수량 | 단가 |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|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|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|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|     |
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·제76조·제88조의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부금 수령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 방법

1.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,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

|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가목(국가·지방자치단체), 나목(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1 |
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다목(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2 |
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라목(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, 비영리 교육재단,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(병원은 제외한다)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3 |
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마목(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·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4 |
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바목[사회복지사업,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·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(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)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5 |
|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나목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6 |
|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정당(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1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나목(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2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다목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| 403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라목(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4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마목[(종교의 보급,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(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)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5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6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가목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·연구비·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7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나목(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8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다목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9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4호(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0 |
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6호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1 |
|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2호(노동조합 등의 회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1 |
|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(공익단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2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(우리사주조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1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(고향사랑기부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2 |

2. ❸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는 방송사, 신문사,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,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3. ❹ 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| 기부금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,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                | 40 |
|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제외) | 43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| 44 |
| 필요경비(손금)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|

4. ❺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"금전기부"의 경우에는 "금전", "현물기부"의 경우에는 "현물"로 적고,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 "현물기부"시 "단가"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,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기부자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            | 개인            |
| 특례기부금                   | 장부가액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| 장부가액          | Max(장부가액, 시가) |
| 그 밖의 기부금                | Max(장부가액, 시가) |               |

5. (유의사항)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)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